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20

대 전 지 방 법 원

제 3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543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 등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1. 11. 2.
판 결 선 고	2021. 11. 30.

주 문

1. 피고가 2019. 8. 12. 원고에게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6,316,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청구취지 기재 2019. 8. 13.은 2019. 8. 12.의 오기로 보인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20

가. 원고는 [redacted]법원 [redacted]지원 2013가합101336호로 B종중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14. 8. 22. 위 법원으로부터 'B종중 등은 원고에게 천안시 [redacted]구 C 외 11필지 199,00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관련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원인을 판결(무상)으로,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1,402,597,780원으로 하여 취득세 49,090,920원, 농어촌특별세 2,805,190원, 지방교육세 4,207,790원 합계 56,103,9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고, 2014. 10.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9.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973. 3. 15. 사망한 진정명의자인 D(원고의 부)의 상속인에게 원상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8. 9.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전액 환급결정 통지를 한 후, 2019.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1,402,597,7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17,397,340원, 지방교육세 3,277,220원 합계 20,674,5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224,46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316,64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등록세 등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세 등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이하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19. 9. 24.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2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0. 4. 8. '이 사건 등록세 등 처분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에서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2,022,240원 및 202,220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2014. 10.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가 아닌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이를 반려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지방세법 부칙<제10221호, 2010. 3. 31.>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20

제30조의4 제3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해당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2 제1항 제1호는 위 법 규정에 따른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260조의4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73. 3. 15. D의 사망 및 1997. 7. 25. E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상속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4. 10.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2019. 8. 12.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14. 10. 2.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할 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20

있고, 이 사건 처분이 2014. 10. 2.부터 5년 이내인 2019. 8. 12. 이루어진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세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48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구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구 지방세법에서의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가 현 지방세법 상의 취득세로 통합되었으며, 원고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그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점, ② 위와 같은 지방세법 개정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2014. 10. 1. 당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행정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20

치부 지방세정팀-386, 2005. 4. 22.)과 이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일 뿐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인천지방법원 2013. 6. 30. 선고 2013구합684 판결)이 혼재하다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4지1416, 2015. 2. 16.)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2271, 2016. 9. 2.) 변경 이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등록세의 과세대상이라는 과세관행이 정착되었는바,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세무공무원도 원고에게 등록세가 아니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잘못 안내할 정도라면 원고의 등록세 등 미납부가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세 등 처분 전까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 및 이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등록세 대신에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20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20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2010.1.1>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20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60조의4(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제233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제260조의5(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칙 <제10221호, 2010. 3. 31>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1-20

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끝.